

**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** (제16조의3제2항 관련)

| 기술인력   | 시설 및 장비   |
|--|---|
| <p>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 제2항에 따른 시험·검사기관,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 2제1항에 따른 시험·검사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따라 인정한 시험·검사기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에 각각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</p> <p>가. 화학, 수질, 토양, 역학, 먹는물 분야(3명 이상)</p> <p>나. 의학, 생물학, 대기, 실내공기 또는 악취 분야(2명 이상)</p> | <p>가. 시설: 실험실</p> <p>나. 장비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분석저울(0.0001g) 1대</li> <li>2) 정제수 제조장치 1대</li> <li>3) 가열맨틀 1대</li> <li>4) 가열혼합기 1대</li> <li>5) 수소이온농도(pH) 측정기 1대</li> <li>6) 진공펌프 1대</li> <li>7) 열탈착장치 1대</li> <li>8) 튜브클리너 1대</li> <li>9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) 소형 체임버시스템 1대 및 클린룸시스템 1대</li> <li>나) 공기시료채취 펌프 4대(유량 0.1 ~ 1.5L/min 3대, 유량 0.05 ~ 0.1L/min 1대), 유량제어장치 1대, 유량보정장치 1대 및 흡착관 10개</li> </ul> </li> <li>10) 삭제 &lt;2013.6.28&gt;</li> <li>11) 기체크로마토그래프-질량분석기(GC-MS) 1대</li> <li>12) 액체크로마토그래프(HPLC-DAD) 1대</li> <li>13) 원자흡수분광광도계(AAS) 1대</li> <li>14) 유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계(ICP) 1대</li> <li>15) 자외-가시선분광광도계(UV/VIS) 1대</li> <li>16) 광학현미경 1대</li> <li>17) 원심분리기 1대</li> <li>18)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</li> </ol> |

**비고**

1. 위 표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2. 위 표의 시설 및 장비란 나목1)부터 9)까지 및 11)부터 17)까지의 장비는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12호의 환경유해인자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·검사 등의 방법에

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.